

제3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			
일 시	2025년 9월 15일 월요일 10:40~11:40	장 소	가족어울림센터 센터장실
출석현황	재적현황 6인 중 6인 출석		
출석위원	문**, 정**, 최**, 최**, 김**, 김**		
불참석위원	-		
간사(기록)	최**(사용자 위원), 최**(근로자 위원)		
회의 내용	I. 성원보고 및 전차회의 결과보고 II. 안건 1. 근로자 복지증진 운영현황 보고 2. 온라인 보수교육(사회복지) 재택수강 허용요청의 건 3. 기타 안건		
안 건	-		
결 과	2025년 4차회의는 12월 첫째주에 실시예정		
회의 내용			
☐ 문**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, 최** 위원이 성원보고 함 각 위원들의 안부를 공유하고, 2025년 2차 회의 안건의 진행보고를 설명함 ☐ 정** : 2025년 2차 회의시 직원복지후생으로 소개한 직장동아리를 8월까지 3회기 진행하였고, 활동동아리는 총 5개, 21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, 개개인의 만족도가 높은편임. 추후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 직원 대상 업무스트레스 및 업무협업 등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있음. 또한,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직원인식개선 교육을 9월 1일 월례회의 이후 진행하였음을 보고함. ☐ 정** : 2025년 3차 회의는 안건 첫 번째,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현황을 보고함. 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온라인 보수교육(사회복지) 재택수강 허용요청의 건을 설명함. 셋째, 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. ☐ 문** : 두 번째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정**위원에게 요청함 ☐ 정** :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시 온라인교육의 경우 개인학습환경 및 편의증진을 위해 재택수강의 허용을 제안하는 직원이 있어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고자 함. 또한, 사회복지사 외의 보수교육이나 오프라인 보수교육의 경우 직원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. ☐ 최** : 현재, 가족센터 내 사회복지사보수교육 필수 대상자는 20명으로, 기 수강자 5명을 제외하고, 온라인교육 대상자는 약 11명으로 조사됨. ☐ 문** : 여러 사회복지기관마다 보수교육 수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, 가족			

센터 업무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외의 직무별 보수교육 또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 간 평등한 보수교육 수강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한 상황임.

- 최** : 기존 업무용PC로 온라인보수교육을 수강했을때에는 총 8시간동안 교육을 들으면서 업무를 처리하거나, 전화를 받는 상황등이 발생하여 온전히 보수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적이 많았음. 자택에서 수강하게 된다면 교육 집중도와 교육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
- 최** : 자택수강으로 진행될 경우, 언제부터 적용을 할지와 이미 수강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까지 고려되었으면 함
- 김** : 상주 직원 외 보수교육의 경우에는(활동가 등) 상위기관에서 명확하게 오프라인 수강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시 자택에서 듣는 경우가 많지만 센터에서 종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복지기관이나 가족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주변조사를 해서 반영되면 더욱 좋을 듯 함
- 정** : 좋은 의견 감사하며, 그동안 모든 온라인교육은 업무용PC에서 진행되고 있는데, 온라인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모든 교육시마다 교육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였으나,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사를 진행해보고자 함
- 문** : 기 수강생의 보상문제와 추후 보수교육 및 온라인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온라인교육시 재택근무는 2026년부터 실시해보고자 함.
- 정** : 기타안건으로, 가족돌봄휴직및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안건을 제시함. 가족센터 취업규칙 제22조<가족돌봄휴직및휴가>에 의거하여 직원의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휴직과 돌봄휴가를 허용할 수 있음. 최근 가족돌봄으로 휴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어 업무의 공석을 대비하고, 관련 서류대비를 위해 안건으로 상정함
- 김** : 직원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고, 진단서 내 0~00일간의 요양 및 돌봄이 필요한지 명시가 되어있으면 증빙으로 효력이 있을 듯 함.
- 문** : 해당 휴직기간의 대상이 직원 또는 가족구성원인지에 따라 직원의 돌봄휴직기간이 상이할 것으로 보임. 관련 내용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안내하고자 함
- 최** : 해당 안건을 위해 노무사에게 질의할 예정이고, 만일 4차 회의 전 돌봄휴직 및 휴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진행 후 4차회의에 따로 보고를 진행하고자 함.
- 정** : 추가로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는지 질의 함
- 김** : 방문교육사업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연말에 2주정도의 활동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았음. 활동을 쉬는 것은 괜찮지만 이 활동공백으로 인해 주휴수당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당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조정이 필요함
- 최** : 한정된 예산으로 활동이 연계되어야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하고, 김**위원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. 연초 예산을 기획할 때 많은 경우의 수를 반영하려고 하나, 4대보험 등 요율의 미리 반영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이 따름. 방문교육서비스 예산에서 사업비부분을 조절하여 인건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겠음.

- 김** : 추가 논의사항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쌍둥이 활동연계의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음. 타 시군구에서는 쌍둥이 연계시 한명의 아동에게 활동가 한명이 배정되기도 하고 최근 타시군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에서도 한명의 활동가가 쌍둥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생긴 학대로 이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쌍둥이 돌봄연계시 주양육자+활동가 또는 활동가 2명으로 배정된다면 좋을 듯함
- 정** : 좋은 의견에 감사하며,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활동연계를 바로 변경할 수 없지만 추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한 아동돌봄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음
- 최** : 두 가지의 안건을 제시하고 싶음. 첫 번째, 생리휴가가 직원취업규칙에 있으나 실제로 사용한 사례가 없어서 직원들이 선뜻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. 필요한 절차나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함. 두 번째, 센터에 월차, 연차, 반차가 있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간단한 진료나 관공서 업무를 보기 위해 반차(4시간)를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반반차(2시간)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받았음
- 정** : 첫 번째, 생리휴가제도의 안내와 사용절차에 대해 안내를 진행하겠음. 둘째, 반반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휴가제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료됨. 주변 기관의 휴가제도의 상황을 파악하고 센터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해보고자 함
- 최** : 의견반영에 감사드리며, 추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월례회의 등에 짧게 요약해서 직원들에게 공지된다면 좋겠음
- 최** : 추후 월례회의시 요약본을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겠음
- 문** : 폐회를 선언함